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47 발의연월일: 2025. 2. 27.

발 의 자:이수진·김문수·송옥주

김준혁 • 추미애 • 윤호중

김정호 · 허성무 · 박홍배

전종덕 · 김동아 · 서미화

김현정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하고 있음.

숙련된 간호인력인 교육전담간호사는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위한 신 규간호사 양성에 필수적인 인력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교육전담간호 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른 국가의 지원도 필수적 임.

이에 국가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양질의 간호사를 양성함으로써 환자에게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법률 제 호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445호 간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원 대상·범위·금액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렁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445호 간호법	법률 제20445호 간호법
제32조(교육전담간호사) ①・②	제32조(교육전담간호사)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교육	③
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u>비</u>	<u>用</u>]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수 있다</u> . <후단 신설>	지원 대상ㆍ범위ㆍ금액 등 지
	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